##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 539

발의연월일: 2009. 8. 28.

발 의 자: 박수범·조신형 의원외 6인

#### 1. 제안이유
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 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 로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합 의: 예산담당관실, 법무통계담당관실, 복지정책과와 합의

##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**제3조(지원사업)** 대전광역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1.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 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
  - 3.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  - 4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
- 제4조(참전명예수당) ①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 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4호·제6호·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 금을 받는 사람
  - 2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
-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- ③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보조금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관 련 법 령

#### 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】

- **제2조 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2.1.26, 2005.3.31, 2007.1.3>
  - 1. "6·25전쟁"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  - 2. "참전유공자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.
 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군인
 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 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
 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
 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 장이 인정한 자
- 제4조 (국가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<개정 2002.1.26>
  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 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
  - 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  - 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
- 제5조 (등록 및 결정)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.26>
  -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02.1.26>
  - ③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02.1.26, 2007.1.3>

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2.1.26, 2007.1.3>

- 제6조 (참전명예수당)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 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당지급대상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3.5.29, 2006.3.3, 2007.1.3, 2008.3.28>
  - ② 삭제 <2005.3.31>
  -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 <개정 2003.5.29, 2005.3.31>
  -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03.5.29>
  - 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19조 본문,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·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7.1.3>
  -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·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2.1.26]
- 제27조 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·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)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
- 2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
- 3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
- 4.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
- 5.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
- 6.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
- 7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8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
#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

의 원 명,	서 명	비고
DV TIN	Ide no non	
33	1997 and	
5 23	11000	
6 27 78	71	
Thorn	toon	
0) 77 6)	11/1	
a wolm		
2.0060	V	
A 101 21	243	
9 701 20		